

서울특별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- 발 의 자 : 임종국 의원 외 15명
- 의안번호 : 제548호
- 발의일자 : 2019년 3월 29일
-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
2. 제 안 이 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는 장애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,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는 장애인이 정치 및 공적 생활에 효과적이고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 “장애”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어 관련표현을 수정하고자 함.

3. 주 요 내 용

- 가. 위원회 위원 제척·회피 사유에 “장애” 표현을 수정함(안 제14조제3항제1호).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5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 선 희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본 조례 개정안은 “장애”라는 단어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조항에 대해 “장애”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1)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에 의하면 ‘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’라고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따라 2016년 2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할 바 있음.

2)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

-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.
- 동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‘심신장애’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, ‘심신장애’라는 문구는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‘장애’라는 단어가 부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.

첨부 1.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

제6조(차별금지)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된다

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

개정 전
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

개정 후 (2016. 2. 3)

제8조(위원의 신분 보장)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.